

2021년 상반기 공무원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공고

2021년도 상반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 시험(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2021-55호)에 따른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최종합격자 명단

채용직종	응시번호	성명	비 고
홍천국토 도로보수원	홍천보수원-001	임○강	
	홍천보수원-005	주○남	
강릉국토 도로보수원	강릉보수원-001	이○영	
	강릉보수원-002	유○혁	
	강릉보수원-011	조○명	
정선국토 도로보수원	정선보수원-001	심○용	
홍천국토 운영제한단속원	홍천단속원-004	최○섭	
강릉국토 운영제한단속원	강릉단속원-001	이○준	
정선국토 운영제한단속원	정선단속원-002	주○명	

※ 최종합격자 개별 문자 통보 예정

2. 임용관련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서류('21. 6. 18.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전부 기재된 것으로 발급
-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
- 사진(3cm × 4cm) 3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분)

나.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제출기간 : '21. 6. 21.(월) ~ 23.(수) 18:00 까지
- 제출처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방문제출)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참고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wrocm>
- 유의사항 : 임용관련 서류 제출 시, 근로계약 체결예정으로 **우편접수는 불가함**
※ 반드시,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는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21. 6. 23.(수) 18:00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로 방문하셔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기간 내에 임용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채용포기)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서류 허위사실 확인 및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합격취소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의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앞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⑥ 검사 시					
⑦ 재 사용				⑧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우: ()		
종 양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골격계 질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부 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합 격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	----------

210mm × 297mm [백상지 (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결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백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